

2019.08.05

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中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 I. 개요

‘2019년도 세법개정안’ 중 관세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예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 II. 주요사항

### 1. 개정 사유

- 수출입 중소·중견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
-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
- 상항 입법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용어 명확화

### 2. 개정 내용

#### 1) 수출입 중소·중견 기업 지원

-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규정 신설 (관세법 §173)
  - 물품 검사 비용 부담 주체 중 국가 부담 추가
  - > 중소·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별도 검사 장소 이동 시 검사비용 (컨테이너 운송료, 상·하차료, 물품 적·출입료) 국가 부담 단,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한 경우 제외
  - 적용 시기 : 20.07.01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

#### □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(부가령 §91의2)

-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
- ‘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’ 단서 규정 추가 및 신청기한 1개월 → 3개월 이내 확대
- 적용 시기 : 영 시행일 이후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2019.08.05

#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中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# Ⅱ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1) 수출입 증소·증견 기업 지원

- 증소·증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(조특법 §118)
  - 증소·증견기업 보세공장 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시설재로  
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면제 규정 신설 (사후관리 별도 필요)
  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## 2) 납세자 편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정비

- 보세판매장(면세점) 구매물품 반출 시 관세 환급 허용 (관세법 §106조의2)
  -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으로 자진신고 후 통관된 여행자 휴대품 반품 시  
관세 환급 대상 포함
  - 적용 시기 : 21.1.1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
- 관세 불복제도 개편
  -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·심판 조항 준용범위 확대 (관세법 §118⑥)
  - 심사청구서의 보정방법 명확화 (관세법 §123②)
  -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 
(관세법 §118, §129조의2)
  - 불복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보완 (관세법 §125)
  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부터 적용

2019.08.05

#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中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2) 납세자 편의 제고 및 권익보호 위한 규정 정비

###### □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 (FTA관세법 §14, §46)

- 원산지증빙서류 내용 오류 통보에 따른 수입자의 경정청구 임의 규정화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오류통보 분부터 적용

###### □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(FTA관세법 §9①)

-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을 날 ~ 45일 이내 FTA 사후 신청 가능
- 적용 시기 : 20.4.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

###### □ 금품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(관세법 §277의2⑤)

- 실무상 관세청장에게 금품 공여 시 과태료 부과·징수함을 반영한 근거 마련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

###### □ 통고처분시 납부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(관세법 §311, 관세령 §270의2①)

- 통고처분 벌금 최고액 100분의 20 → 100분의 30으로 상향
- 신분, 전과, 법 위반 동기 등 정상을 고려한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규정 추가
- 적용 시기 : 20.7.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

2019.08.05

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中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 II. 주요사항

### 2. 개정 내용

#### 2) 납세자 편의 제고 및 권익보호 위한 규정 정비

□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 (관세법 §246의2)

- 보상 대상 검사 범위 : 관세법상 모든 검사로 대상 확대
- 적용 시기 : 20.7.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

□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(관세법 §99, 관세칙 §54)

- 수출기업 및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 지원 물품 대상 확대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3) 밀수행위 감시·단속 및 밀수품의 국내 유통 차단

□ 밀수출·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·추징 근거 신설 (관세법 §271③, §274③)

- 밀수출·입 등 예비범 처벌 시 징역·벌금·몰수·추징으로 범위 확대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

□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 (관세법 §136③)

- 출항허가 신청 시 → 출항허가 전 적하목록 제출 가능 규정 변경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출항허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2019.08.05

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중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 II. 주요사항

### 2. 개정 내용

#### 4) 행정 제재 일원화 및 근거 명확화

□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(관세법 §41, §42)

- 지연이자 성격의 통합과 체납에 대한 제재 유지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 (관세법 §96②)

- "관세" 범위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포함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밀수출·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(관세법 §282②)

- 폐기물 등 임의적 몰수 대상 전환 시
  - ① 환경부 → 소유자 불법 수출·입 업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
  - ② 업체 미이행 시 환경부 행정대집행 후 범칙자에게 처리비용 징수 가능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

□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추가 (관세법 §240의6)

-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근거 명확화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정보교환 하는 분부터 적용

2019.08.05

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중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 II. 주요사항

### 2. 개정 내용

#### 4) 행정 제재 일원화 및 근거 명확화

##### □ 사후관리 위탁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마련 (관세법 §180③)

-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재위탁 근거 마련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부터 적용

##### □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 (FTA관세법 §5)

- 공중도덕 보호, 인간·동물·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,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세율 적용 우선 순위 1순위로 변경
- 협정세율 = 관세법상 적용세율 시 선택 적용으로 규정 변경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

##### □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 (FTA관세법 §44③)

- 과실로 원산지 증명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았거나 작성한 경우의 벌금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분부터 적용

##### □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 (관세사법 §8①, §27⑤)

- 징계의결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 시 관세사 등록 취소, 2년 → 5년 재등록 제한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징계요구 건부터 적용

2019.08.05

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中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 II. 주요사항

### 2. 개정 내용

#### 5) 상향 입법으로 인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 (관세법 §178①, 관세령 §193의2)

-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량 관리의 부적정 등 행정 제재 사유 추가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(관세법 §284의2)

- 현재 『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』에 따라 운영 중인 '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설치' 근거 신설
- 적용 시기 : 20.7.1 이후부터 적용

#### 6) 관세 품목분류 제도 정비

□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등 (관세법 §87①, 관세령 §107)

- WCO(세계관세기구)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 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 변경 사유 추가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조제한 식용 해초류 (조미김 등)의 품목분류 변경 (관세법 별표 관세율표)

- 기타 조제 식료품 (2106.90호) → 식물성 조제품 (2008.99호) 분류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부터 적용

2019.08.05

#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』 중 관세 관련 개정 안내

## II. 주요사항

### 2. 개정 내용

#### 7) 조특법 상 감면 관련 기한 연장

□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
(조특법 §126의7㉔)

-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'19.12.31 → '21.12.31 연장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부터 적용

□ 신·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18)

- 중소·중견기업 신·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'19.12.31 → '21.12.31 연장
- 적용 시기 : 20.1.1 이후부터 적용

◇ 『2019년도 세법개정안 중 관세사 관련 발췌』 : “붙임”

◇ 시행일자 : 각 조항 별 시행일 상이



# 2019년도 세법개정안 중 관세사 관련 발취

□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(관세법 §173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물품검사 비용의 부담 주체</p> <p>○ 화 주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□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중소·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후 검사 시 검사비용* : 국가 지원</p> <p>* 컨테이너 운송료, 상·하차료, 물품 적·출입료</p> <p>- 단,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*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</p> <p>* 관세법, 대외무역법, 상표법 등</p>

<개정이유>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·중견기업 지원

<적용시기> '20.7.1.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

□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(부가령 §91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*</p> <p>*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(예정·확정신고)시까지 유예</p> <p>○ (적용대상) 다음 요건*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·중견기업</p> <p>① 수출비중 30%(중견 50%)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</p> <p>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·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</p> <p>③ 최근 2년간 관세·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○ (신청기한) 신고기한 만료일* 부터 1개월 이내</p> <p>*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</p>	<p>□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p>- 단,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제외</p> <p>○ 1개월 이내 → 3개월 이내</p>

**<개정이유>**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

**<적용시기>**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중소·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(조특법 §118)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*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 가능하나 시설재는 관세 납부(통관) 후 사용</p>	<p>□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기업) 중소·중견기업</li> <li>○ (대상물품)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</li> <li>○ (사후관리) 사후관리기간*내 특허 효력 상실 또는 시설재의 양도 등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의 범위</li> </ul> </li> <li>○ (적용기한) '22.12.31.</li> </ul>

<개정이유>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·중견기업 이용률 제고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보세판매장(면세점)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(관세법 §106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관세 환급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 물품 (1년 이내)</li> <li>○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단순반환 물품(6개월 이내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p>□ 관세환급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을 관세 납부* 하고 통관 후 반품하는 물품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진신고한 경우만 해당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보세판매장(면세점)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(관세법 §99, 관세칙 §54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재수입 면제 대상물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·가공·수리·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</li> <li>- 단,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제</li> <li>① 박람회, 전시회, 품평회 등에 출품·사용되는 물품</li> <li>②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</li> <li>- 임대차·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p>□ 재수입 면제 대상물품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·조립·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</li> <li>④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, 상태 측정·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</li> <li>⑤ 국제 경기대회 참가, 전지 훈련 등을 위해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</li> <li>⑥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재수입되는 물품(사용과 무관)</li> <li>⑦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</li> </ul>

<개정이유> 수출기업 및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 지원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 
(FTA관세법 §9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만 가능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신청 가능 *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

**<개정이유>**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

**<적용시기>** '20.4.1.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

□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
(관세법 §41, §4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<input type="checkbox"/> (납부고지 전 : 납부불성실가산세(㉠) - 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) × 1일 0.025% <input type="checkbox"/> (납부고지 후 : 가산금) - (미납세액 × 3%)(㉡) + 매 1개월마다 월 0.75%(㉢)	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가산세(①+②)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(㉠+㉢)은 통합 - 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) × 1일 0.025% ② 체납에 대한 제재(㉡)는 유지 - 미납세액 × 3%

**<개정이유>**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

**<적용시기>** '20.1.1.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관세 불복제도 개편

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·심판 조항 준용범위 확대  
(관세법 §118⑥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·심판 조항 준용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사청구관련 기간계산</li> <li>○ 심사청구서의 보정</li> <li>○ 대리인</li> <li>○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</li> <li>○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p>□ 준용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심사청구관련 우편제출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특례</li> <li>○ 관세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 개최(예외 공개)</li> <li>○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과세전적부심사 권리구제 및 운영 절차 명확화

**<적용시기>** '20.1.1.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심사청구서의 보정방법 명확화(관세법 §123②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○ (재결청) 불복청구서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 요구 가능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방법 명확화 ○ (좌 동) ○ (청구인) 출석하여 보정내용 구술 또는 서면 제출

<개정이유> 불복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보정 요청 분부터 적용

③ 불복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보완(관세법 §12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불복제기시 처분의 효력 ○ (원칙) 집행부정지* * 이의신청·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○ (예외)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정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집행정지 기준 명확화 ○ (좌 동) ○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정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집행정지 결정 통보의무 ○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시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

<개정이유> 집행정지 기준을 명확화하고 집행정지 관련 결정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집행정지 결정 분부터 적용

④ 이의신청·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·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명문화(관세법 §128의2, §132④)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* 현재 심판 결정에 대해서만 규정중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원칙</p> <p>○ 불고불리* 원칙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불복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</p> <p>○ 불이익 변경금지* 원칙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불복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</p>

**<개정이유>** 심판결정에 대한 원칙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

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(관세법 §118, §129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불복신청서 등* 제출 방법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과세전적부심사청구</p> <p>○ 서면 제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현재도 관세청 유니패스,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제출 근거 마련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○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제출</p>

**<개정이유>** 온라인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



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  
(관세법 §311, 관세령 §270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통고처분* 기준금액</p> <p>* 벌금,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</p> <p>○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액 상향</p> <p>○ 100분의 20 → 100분의 30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</p> <p>○ 신분, 전과, 법 위반 동기,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* 가능</p> <p>* 범칙조사심의위원회(신설)의 심의를 통해 면제여부 결정</p>

**<개정이유>** 통고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면제를 통해 납세자 부담 완화

**<적용시기>** '20.7.1.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

□ 밀수출·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(관세법 §282②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밀수출·입죄의 범칙물품 몰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원칙) 필요적 몰수</li> <li>○ (예외) 임의적 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</li> <li>-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p>□ 임의적 몰수 대상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</li> <li>-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폐기물 등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\*

\*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, 환경부는 소유자인 불법 수출·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→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행정대집행 후 범칙자에게 처리비용 징수 가능

**<적용시기>** '20.1.1.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

□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추가(관세법 §240의6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*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관한 협정(양자협정)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약(다자협약)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교환 ○ 관세의 부과 및 징수 ○ 과세불복에 대한 심리와 형사소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보교환 목적 추가  ○ (좌 동) ○ 수출입 신고의 검증

<개정이유>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근거 명확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정보교환 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밀수출·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·추징 근거 신설  
(관세법 §271③, §274③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밀수출입 등 예비범 처벌 ○ 징역·벌금(본죄의 1/2 감경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몰수·추징 근거 신설 ○ (좌 동) ○ 몰수·추징

<개정이유> 밀수행위 억제 및 밀수품의 국내 유통 차단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

(3)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(관세법 §246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손실보상)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: 수리비 상당 금액 (한도: 해당물품의 과세가격)</li> <li>-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: 해당물품의 과세가격</li> </ul> </li> <li>○ (보상대상 검사) 수출·수입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	<p>□ 손실보상 대상 검사범위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세법상 모든 검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</li> <li>-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</li> <li>- 물품의 품명·규격·성분·용도·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·화학적 분석검사 등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사후관리 위탁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마련(관세법 §108③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감면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후관리 대상물품) 용도세율의 적용, 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</li> <li>○ (사후관리 내용) 대상물품에 대한 감면 등 조건의 이행 확인</li> <li>○ (사후관리 주체) 원칙상 세관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현재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통해 운영 중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위탁 근거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위탁</p>

**<개정이유>** 사후관리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명확화

□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(관세법 §96②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(15만원 이내)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문구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관세”의 범위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 자진신고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구 명확화

□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(관세법 §136③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출항 적하목록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출대상)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하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</li> <li>○ (제출시점) 출항허가 신청 시 적하목록을 함께 제출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* 현재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를 통해 운영 중</p>	<p>□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>- 출항허가 신청 전에도 적하목록 제출 가능</p>

**<개정이유>** 신속한 출항 및 효율적인 밀수출 감시·단속

**<적용시기>** '20.1.1. 이후 출항허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(관세법 §178①, 관세령 §193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* 사유</p> <p>*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·판매·전시 등 정지</p> <p>①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②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</p> <p>③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추 가&gt;</b></p> <p>* 현재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통해 운영 중</p>	<p>□ 행정제재 사유 추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(좌 동)</p> <p>④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량 관리의 부적정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

**<개정이유>**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행정제재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 마련

**<적용시기>** '20.1.1.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-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
(조특법 §126의7⑨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매매 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(3%) 면제</li> <li>○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'21.12.31.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

- 신·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  
특법 §118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·중견기업 신·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율) 50%</li> <li>○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'21.12.31.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신·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지원



□ 금품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및 부과기준 위  
임근거 마련(관세법 §277의2⑤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○ (부과주체) 세관장이 부과·징수 * 현재 실무상 관세청장도 부과·징수 ○ (부과기준) 금품상당액의 5배* * 현재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	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및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○ 관세청장 추가 ○ (좌 동) * 법에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

<개정이유>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

□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(관세법 §284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* 현재는 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운영중 ○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기능 - 사건의 내사 및 조사의 시작 여부 -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- 조사 착수 전 사건 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- 그 밖의 조사 관련 민원 등 ○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<개정이유>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상향 입법

<적용시기> '20.7.1. 이후부터 적용

□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(관세사법 §8①, §27⑤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징계 처분 대상 관세사의 재등록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징계의결 절차에 따른 등록 취소 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간 재등록 제한</li> </ul> </li> <li>○ 징계의결 요구 전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징계회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기간 재등록 제한</li> </ul> </li> <li>○ 징계의결 절차 진행중 자진 폐업 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징계 절차 완료 전까지 등록 취소 불가</li> <li>- 징계절차에 따른 등록 취소시 2년간 재등록 제한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재등록 제한 규정 합리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징계의결 절차 진행중 자진 폐업 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등록 취소</li> <li>- 징계회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기간 재등록 제한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관세사 등록 취소의 형평성 제고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징계요구 건부터 적용

□ 관세 품목분류 제도 정비

①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등(관세법 §87①, 관세령 §107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변경 ○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품목분류를 변경 * 관세법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품목분류 변경사유를 규정  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분류 변경사유 ○ 관계법령의 개정 ○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○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착오 <추 가>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○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사유 추가 ○ (좌 동)  ○ WCO(세계관세기구)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○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이한 품목 분류 결정이 있는 경우

<개정이유>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및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

□조미김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(관세법 별표 관세율표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분류(법 별표 관세율표 ) ○ 조제한 식용 해초류(조미김 등) - 기타 조제 식료품(2106.90호)으로 분류	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분류 변경 ○ (좌 동) - 식물성 조제품(2008.99호)으로 분류

\* 품목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며, 변경에 따른 관세율 변화는 없음.

<개정이유> 국제규범(WCO 결정)을 국내법에 수용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부터 적용

□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(FTA관세법 §5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</p> <p>○ (1순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덤핑방지·상계·보복·긴급·특정국물품 긴급관세·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p>○ (2순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정세율 ≥ 관세법상 적용세율 → 관세법상 적용세율 적용</li> <li>- 협정세율 &lt; 관세법상 적용세율 → 협정세율 적용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□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</p> <p>○ (1순위) 세율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공중도덕 보호, 인간·동물·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,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정관세</li> </ul> <p>○ (2순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정세율 &gt; 관세법상 적용세율 → 관세법상 적용세율 적용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협정세율 = 관세법상 적용세율 → 협정세율 또는 관세법상 적용세율 중 선택 적용</li> </ul>

<개정이유>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간 우선순위 합리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

□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(FTA관세법 §14, §46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에 따른 수입자의 경정청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 오류를 통보받고 세액 과부족이 있는 경우 -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의무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정청구 임의규정화 및 관련 과태료 삭제 -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

<개정이유> 경정청구는 납세자 선택 사항인 점을 감안

<적용 시기> '20.1.1. 이후 오류통보 분부터 적용

□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(FTA관세법 §44③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금 <input type="checkbox"/> (2천만원 이하 벌금)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(300만원 이하 벌금)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(300만원 이하)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

<개정이유>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비

<적용 시기> '20.1.1. 이후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 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분부터 적용